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6호**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38호(2012.12.13.)로 변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5호(2016.09.08.)로 고시된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 지 일대	11,084.0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084.0	-	11,084.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25.9	-	625.9	5.6	
	도 로	625.9	-	625.9	5.6	
획 지	소 계	10,458.1	-	10,458.1	94.4	
	획 지	10,458.1	-	10,458.1	94.4	공동주택 및 부 대복리시설

3.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084.0	-	11,084.0	100.0	
준공업지역	11,084.0	-	11,084.0	100.0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5	20~30	간선 도로	6,910	성수동1가	구의동	일반도로	-	건교부제2493 66.06.21	왕십리로
기정	소로	3	104	10	국지 도로	638	성수동1가 656-641	성수동1가 656-255	일반도로	-	서고시3호 69.01.18	독섬로 1길
기정	소로	3	118	8 (일부:12)	국지 도로	373	성수동1가 656-504	성수동1가 656-241	일반도로	-	서고시3호 69.01.18	왕십리로 2길
기정	소로	3	138	6	국지 도로	358	성수동1가 656-3	성수동1가 656-98	일반도로	-	서고시3호 69.01.18	-
기정	소로	2	(01)	8	국지 도로	48	성수동1가 656-1970	성수동1가 656-421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5호 16.09.08	보행자 우선도로

※ 도로의 번호(01)은 임시 번호임.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	150.00	-	150.00	$50 + (299 \times 0.1)$ $= 79.9\text{㎡}$ 이상
	작은도서관		-	-	-	
	주민운동시설		300.00	-	300.00	
	어린이놀이터		500.00	-	500.00	
	계		950.00	-	950.00	$(299 \times 2.5\text{㎡}) \times 1.25$ $= 934.38\text{㎡}$ 이상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구 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계	-	11,084.0	-	10,458.1	-	6	-	-	6	-	
기정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1,084.0	획지	10,458.1	성수동1가 656-421 번지 일대	6	-	-	6	-	

7. 건축시설계획(변경)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정비 계획	법정 상한		
기정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1,084.0	획지	10,458.1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 대복리시설	60% 이하	250% 이하	285% 이하	60m이하 (20층이하)	
변경										66m이하 (2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299세대 ■ 전체건립규모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도시정비법 제54조)								
			구 분		기 준		세대수		비율(%)		
			계		-		299		100.0		
			60㎡이하		총건립세대수 60%이상		163		54.5		
			60㎡ ~ 85㎡이하				117		39.1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40%이상		19		6.4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 소형주택(60㎡이하)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소형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								
심의완화 사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1%, 지능형건축물: 12% • 공공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85%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3m내에 보도(2m)를 설치하여 대지 동측 10m도로는 실사용 폭원12m로, 남측 6m도로는 실사용폭원 8m로 조성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								

- 높이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획지	건축물 높이 변경 (60m 이하 → 66m 이하)	•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적용 및 층간소음 방지 등 기준층 층고 상향에 따른 높이 변경	

■ 개발가능용적률 등 산정(변경없음)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 공유지
				환산부지	토지지분	
	11,084.0㎡	10,458.1㎡	625.9㎡	161.4㎡	140.4㎡	89.0㎡
공공시설부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공공시설 등 시설물					

제공면적(순부담)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 625.9㎡ - 89.0㎡ + 301.8㎡ = 838.7㎡ (※ 순부담율: 7.6%)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210% + 17% = 227% • 인센티브 = 17%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4%)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1%) + 지능형 건축물(12%)]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 + 가중치 + 1.3 × α) ▶ 대상지 · 준공업지역 (기부채납 7.6%) · 허용용적률 : 227%, 대지면적 : 10,458.1㎡ ▶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1.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838.7㎡ ⇒ 227% × (1 + 1.3 × 1 × 0.0802) ∴ 상한용적률 = 250.67% [250% 이하]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838.7㎡ / 10,458.1㎡ = 0.0802
법적상한용적률	•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285%(계획 기준) 이하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 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 향후 건축심의시 공공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소섵믹스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 수립. (전용 39.99㎡ : 분양 0세대, 임대 14세대 → 분양 7세대, 임대 7세대, 전용 42.87㎡ : 분양 0세대, 임대 14세대 → 분양 7세대, 임대 7세대, 전용 59.98㎡ : 분양 132세대, 임대 3세대 → 분양 122세대, 임대 13세대)

계획 기준		• 소형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소형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285% 이하(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250%			
공공임대주택의 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85% - 250% = 35%			
	증가된 용적률의 50%	35% × 0.5 = 17.5% 10,458.1㎡(대지면적) × 17.5% = 1,830.17㎡			
	의무 연면적	1,830.17㎡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59.98㎡	82.27㎡	3	246.81㎡
		42.87㎡	58.65㎡	14	821.10㎡
		39.99㎡	54.88㎡	14	768.32㎡
		합 계		31	1,836.23㎡
					>1,830.17㎡

8.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주변지역과 조화된 도시경관계획	
환경보전	생태면적을 적용 등 쾌적성 및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재난방지	해당없음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1. 생태면적율	30% 이상	●현재 사업대상지는 불투수 포장지역임.	●녹지, 틈새투수포장 등을 계획하여 생태면적율 37.74% 확보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표1	●사업대상지는 불투수 포장지역임.	●녹지등을 계획하여 녹지평가표1 등급 확보함
3. 지형변동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기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는 평탄지임.	●지형변화를 최소화시키도록 계획 수립
4.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서울시 GIS 포털서비스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비오톱평가 4등급 지역으로 조사됨.	●녹지 등을 계획하여 일부 비오톱 등급이 향상되도록 계획
5.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사업대상지 주변에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건축물 신축시 주변건축물에 영향이 예상됨.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건축물 이격거리 등을 확보함으로써 일조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계획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사업대상지 저층 건축물이 밀집되어 바람길이 미확보되어 있음.	●녹지 확보 및 건축물간의 거리를 확보하여 바람길 확보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증가	●에너지절약성 설계기법 도입
8. 경관	조망권 확보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조망권 보호필요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건축배치 및 완충녹지 조성계획
9. 휴식 및 여유허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녹지,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결하여 휴식 여가공간 조성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도로 계획수립	●인근학교 등 보행로 연결필요	●도로변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충
11. 소음 및 진동	공사시 65dB(A) 이하	●인근도로(왕십리로)에 의한 영향 발생 지역	●방음벽, 이중창 등을 이용하여 영향 최소화
12. 폐기물	폐기물 처리	●주거지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9.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준	계획	증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KB부동산신탁(주)	173	299	126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북동측 경일고등학교 경일중학교, 대상지 남동측 경일초등학교 200m 이내 입지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을 적용하고 현장 소음 대책 강구 함. - 공사에 따르는 분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 함. - 추후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 하고, 학교주변구역임을 표지판 등으로 공지하고 경적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11,084.0	100.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084.0	-	11,084.0	100.0	
준공업지역	11,084.0	-	11,084.0	100.0	

나. 기반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5	20~30	간선 도로	6,910	성수동1가	구의동	일반도로	-	건교부제2493 66.06.21	왕십리로
기정	소로	3	104	10	국지 도로	638	성수동1가 656-641	성수동1가 656-255	일반도로	-	서고시3호 69.01.18	독섬로 1길
기정	소로	3	118	8 (일부:12)	국지 도로	373	성수동1가 656-504	성수동1가 656-241	일반도로	-	서고시3호 69.01.18	왕십리로 2길
기정	소로	3	138	6	국지 도로	358	성수동1가 656-3	성수동1가 656-98	일반도로	-	서고시3호 69.01.18	-
기정	소로	2	(01)	8	국지 도로	48	성수동1가 656-1970	성수동1가 656-421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5호 16.09.08	보행자 우선도로

※ 도로의 번호(01)은 임시 번호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적(㎡)	비율(%)	비 고
획지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10,458.1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의 밀도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준공업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기정	210% 이하	227% 이하	250% 이하	285%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227% 상한용적률 250% 법정상한용적률 285%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	지능형건축물	
기정	4%	1%	12%	총17%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기정	23%	35%	총 58%

다) 높이 계획(변경)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기정	준공업지역	20층 이하(60m 이하)	
변경	준공업지역	20층 이하(66m 이하)	

■ 높이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획지	건축물 높이 변경 (60m 이하 → 66m 이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적용 및 층간소음 방지 등 기준층 층고 상향에 따른 높이 변경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획지	●획지경계선으로부터 3m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획지	● 건축한계선 3m내에 보도(2m)를 설치하여 대지 동측 10m도로는 실사용 폭원12m로, 남측 6m도로는 실사용폭원 8m로 조성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

2)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및 반영사항
1. 생태면적율	30% 이상	●현재 사업대상지는 불투수 포장지역임.	●녹지, 틈새투수포장 등을 계획하여 생태면적율 37.74% 확보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표1	●사업대상지는 불투수 포장지역임.	●녹지등을 계획하여 녹지평가표 1등급 확보함
3. 지형변동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기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는 평탄지임.	●지형변화를 최소화시키도록 계획 수립
4.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서울시 GIS 포털서비스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비오톱평가 4등급 지역으로 조사됨.	●녹지 등을 계획하여 일부 비오톱 등급이 향상되도록 계획
5.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사업대상지 주변에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건축물 신축시 주변건축물에 영향이 예상됨.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건축물 이격거리 등을 확보함으로써 일조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계획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사업대상지 저층 건축물이 밀집되어 바람길이 미확보되어 있음.	●녹지 확보 및 건축물간의 거리를 확보하여 바람길 확보
7.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증가	●에너지절약성 설계기법 도입
8. 경관	조망권 확보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조망권 보호필요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건축배치 및 완충녹지 조성계획
9. 휴식 및 여유허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녹지, 커뮤니티시설 등을 연결하여 휴식여가공간 조성
10. 보행친화공간	보행자도로 계획수립	●인근학교 등 보행로 연결필요	●도로변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보행공간 확충
11. 소음 및 진동	공사시 65dB(A) 이하	●인근도로(왕십리로)에 의한 영향 발생 지역	●방음벽, 이중창 등을 이용하여 영향 최소화
12. 폐기물	폐기물 처리	●주거지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공공임대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합 계	299	100.0	31	31	10.4	100.0
40㎡이하	14	4.7	14	14	4.7	45.2
40㎡초과~50㎡이하	14	4.7	14	14	4.7	45.2
50㎡초과~60㎡이하	135	45.1	3	3	1.0	9.6
60㎡초과~85㎡이하	117	39.1	-	-	-	-
85㎡초과	19	6.4	-	-	-	-

□ 2016년 제8차('16.05.0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8차 도시 계획위원회	수정가 결	1. 대상지 서측 도로(8m) 계획 관련 연결 한 지역의 차량통행시 회차가 가능하도록 추가공간 확보 및 보도 확보 검토.	1. 대상지 서측 도로(8m) 도로 계획관련 연결 한 지역의 차량통행시 회차가 가능토록 대지 내 회차공간(12m)을 확보하고, 주변지역의 도로이용상황(주차, 건물진출입)을 고려하여 보행자우선도로로 계획함. 보도설치 방안(포장) 등 세부계획은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성토록 하겠음.	반영
		2. 대상지 북측 도로(12m)는 서측 구역계 외 필지(성수동1가 656-444 등)로 인해 일정폭원 확보가 불가능하고, 대상지의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구역계 북서측 가각부 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부채납 조정 검토.	2.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상 도로확보계획(12m)을 고려하여 장래 서측지역(성수동1가 656-444 등) 개발시 12m도로가 완성되도록 계획한 사항이며, 서측지역 개발전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북서측 가각부는 기부채납하는 도로내 보도로 각각처리하여 기부채납 면적은 변동없으며, 향후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통해 주변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보·차도 설치하겠음.	반영

I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붙임1 - 정비계획 관련도면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붙임2 - 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변경)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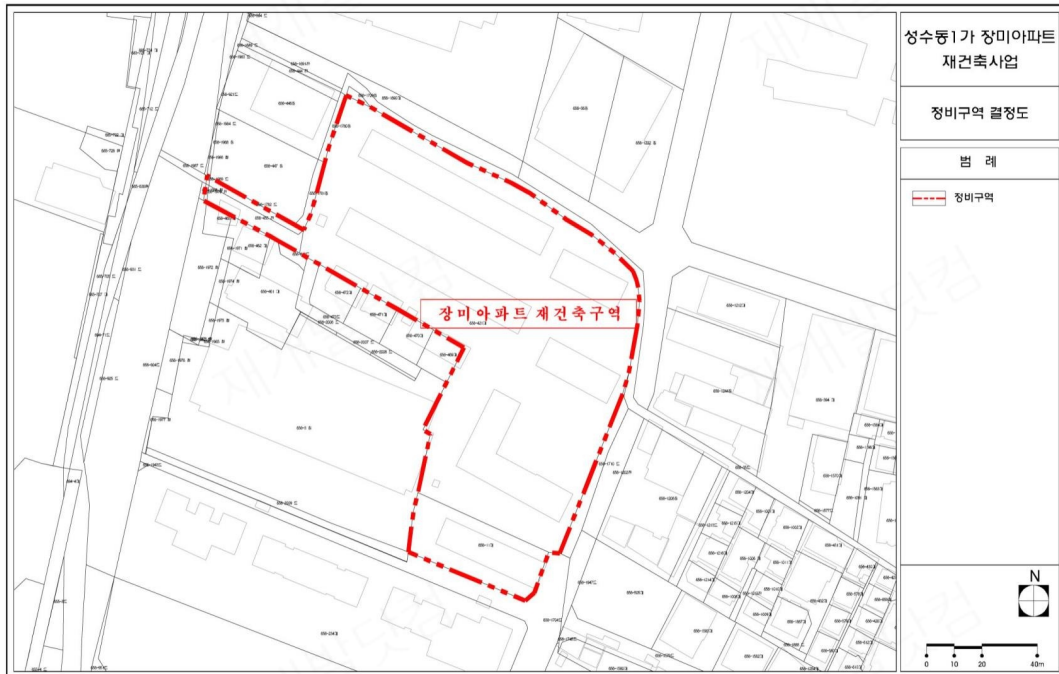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1), 성동구 주거정비과(☎02-2286-6568)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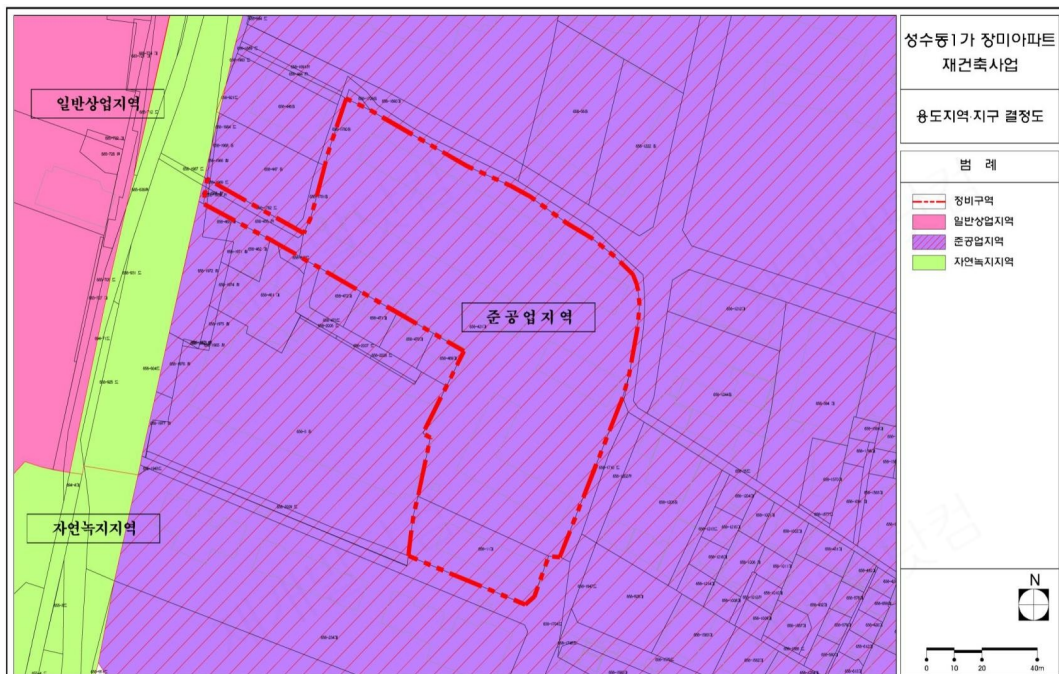
VI.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 붙임1 - 정비계획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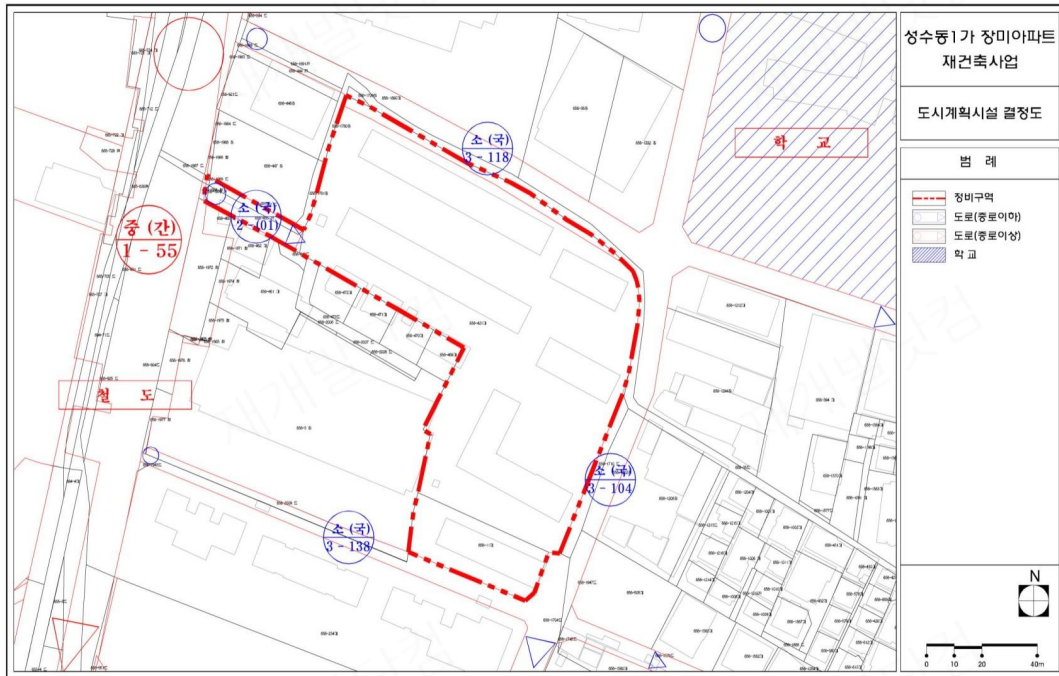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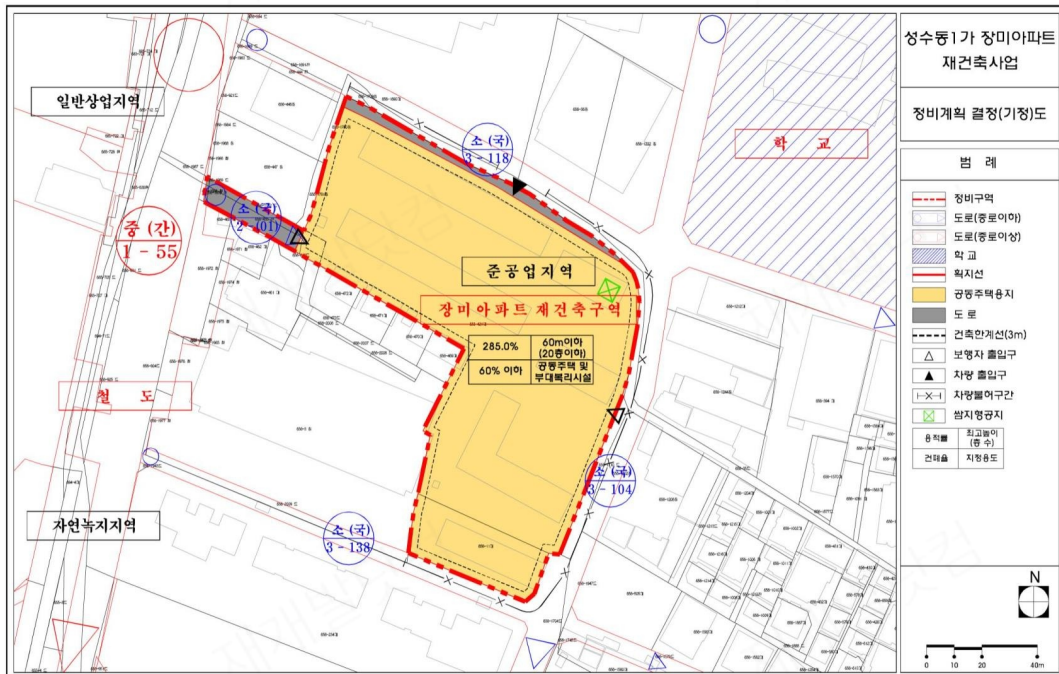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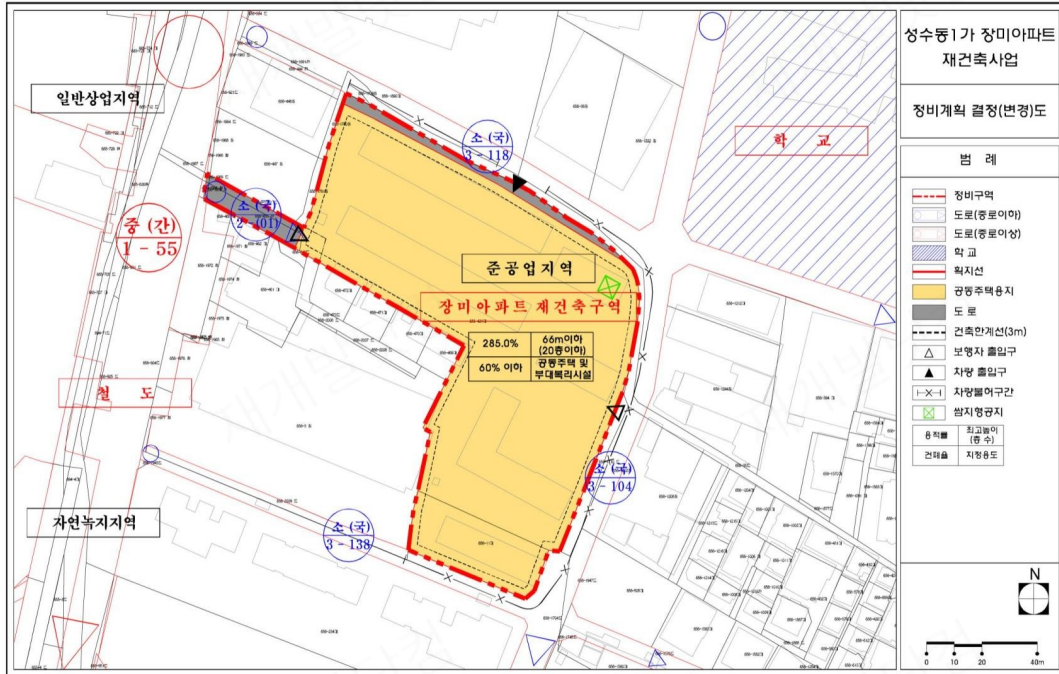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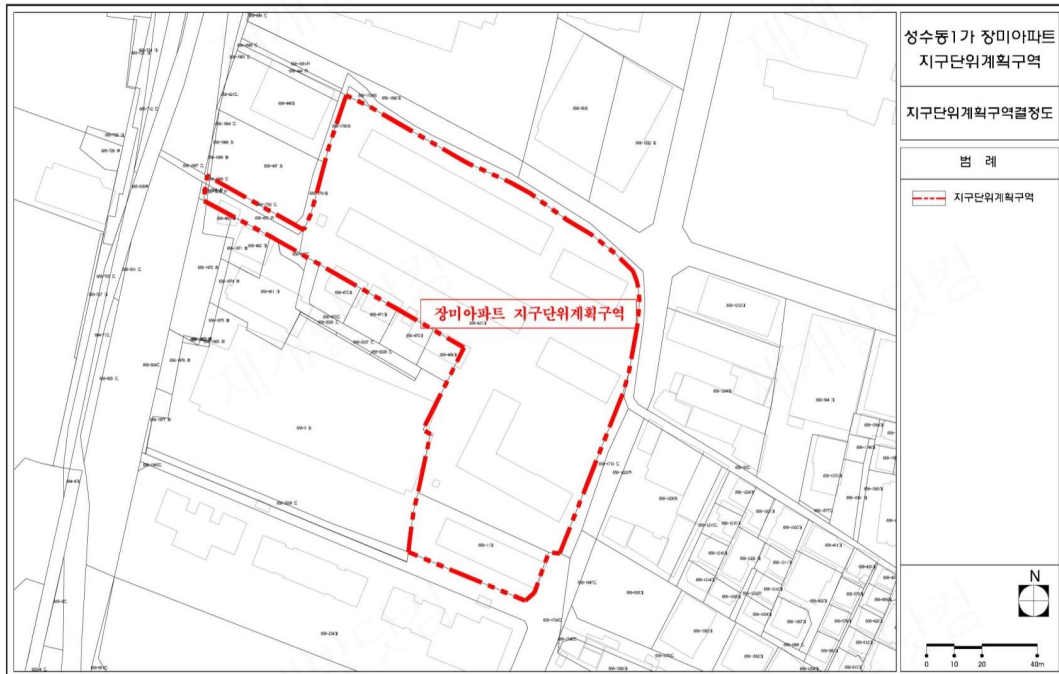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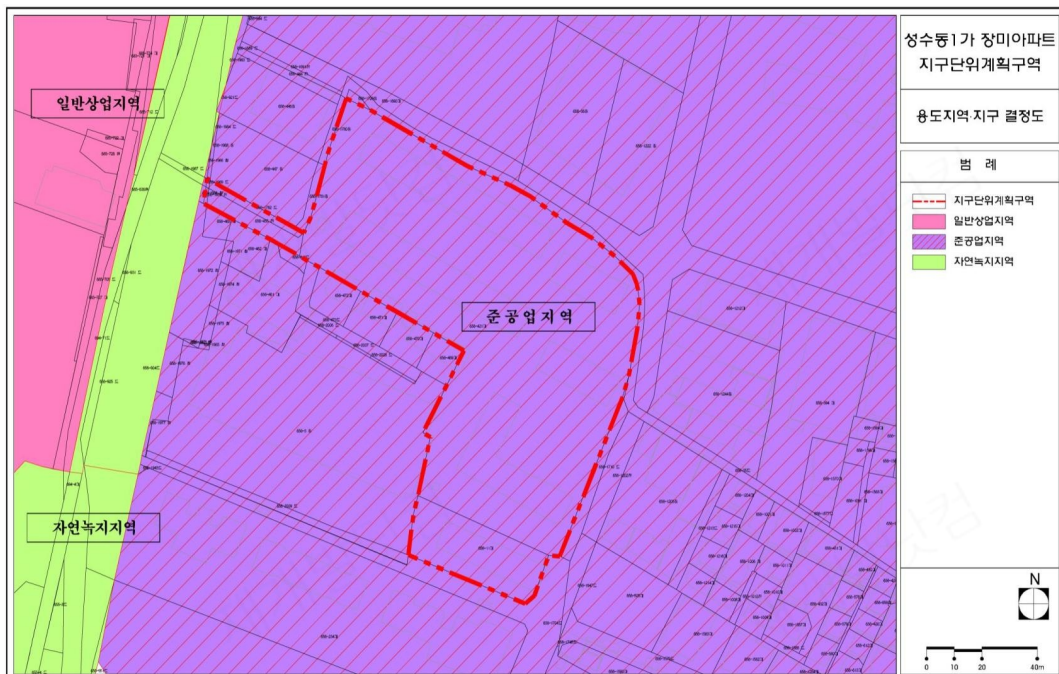


■ 붙임2 - 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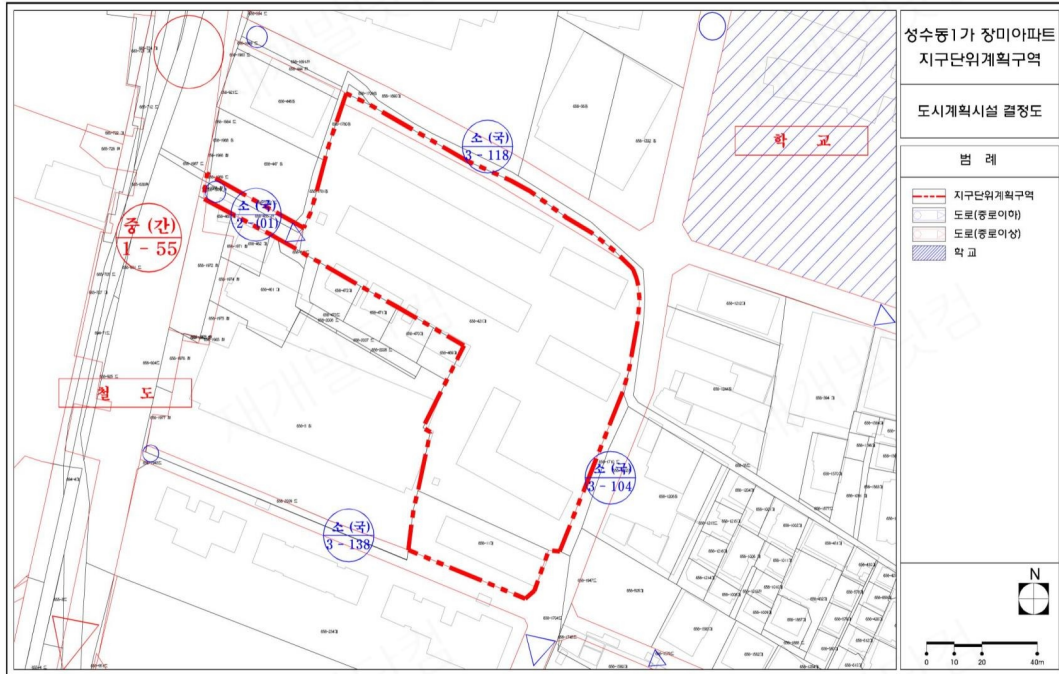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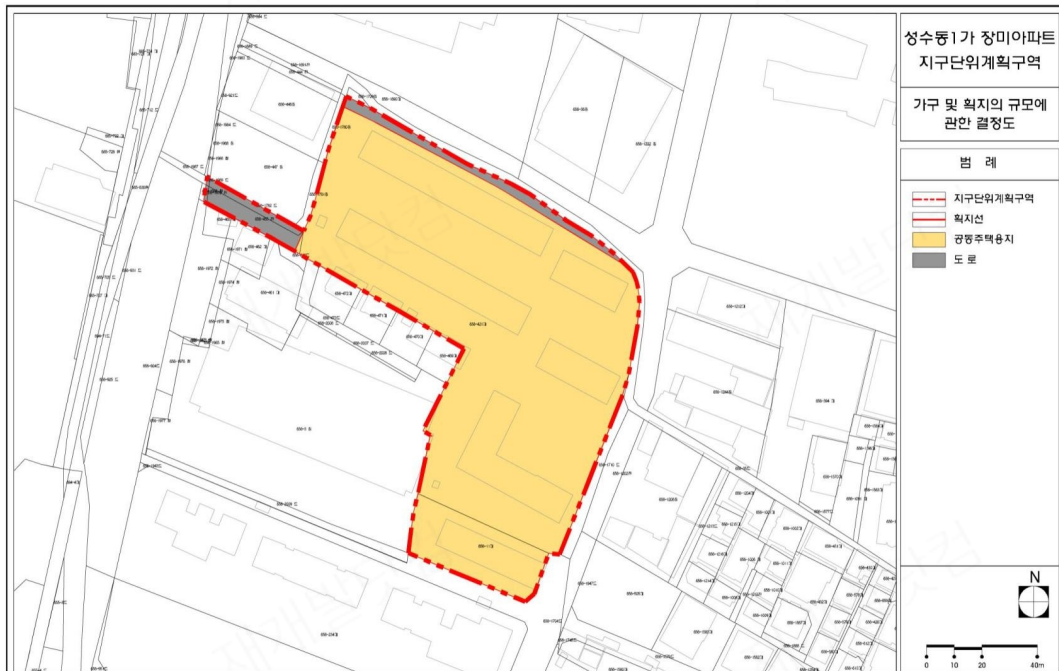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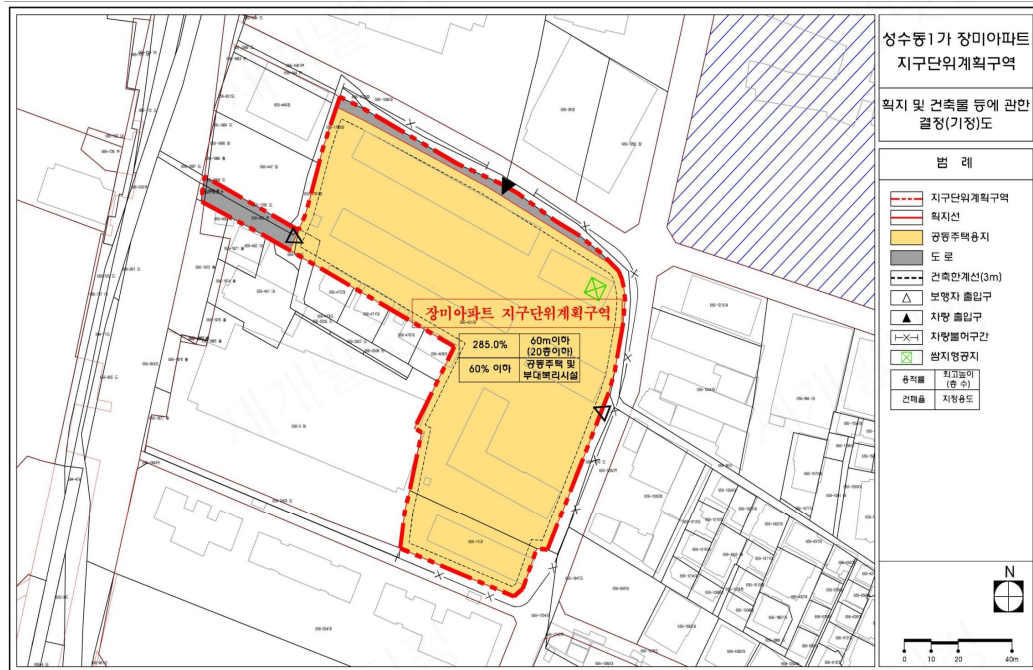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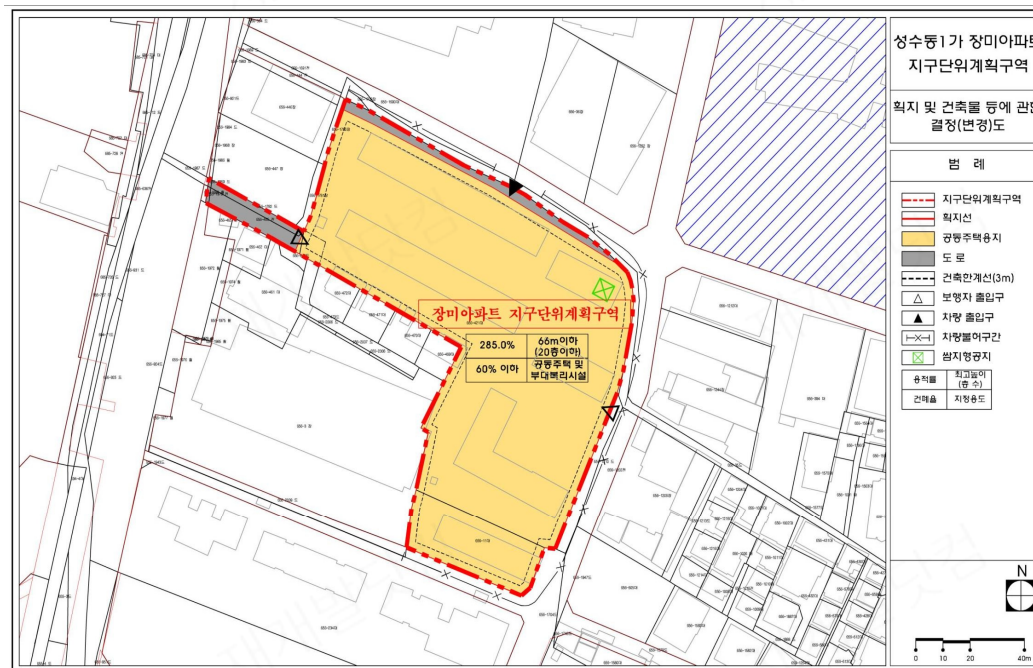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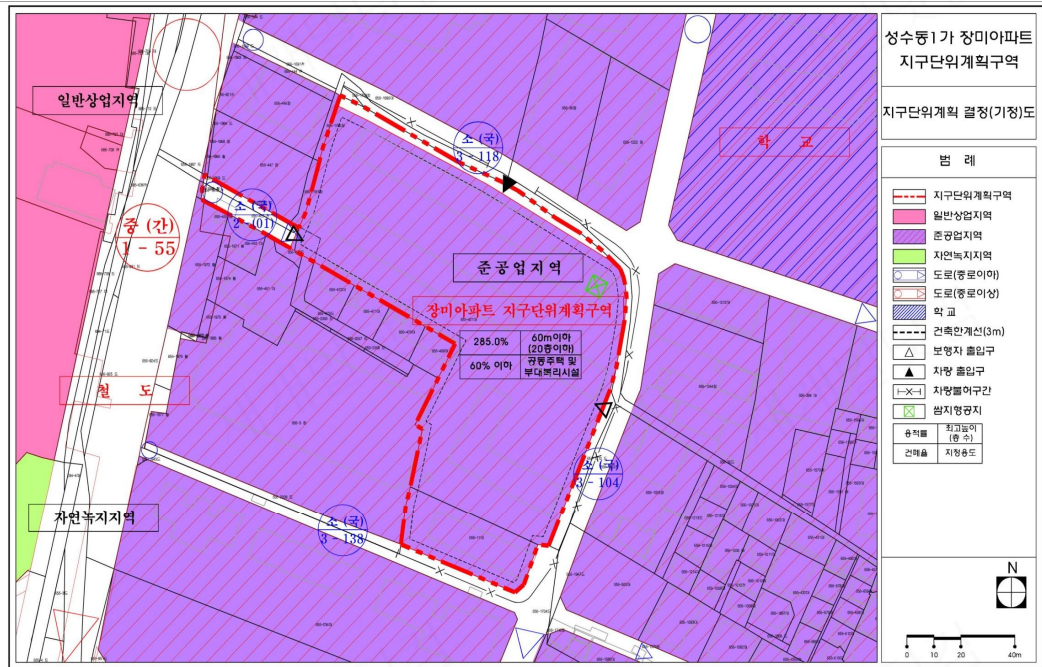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